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38

발의연월일: 2021. 4. 7.

발 의 자:김교흥・김수흥・김홍걸

박영순 · 박찬대 · 소병훈

송영길 · 신동근 · 윤관석

조응천 · 허종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. 국제 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규와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의 규정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,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 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것임(안 제3조의2). 법률 제 호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조약과의 관계)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그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3조의2(조약과의 관계) 국제철
	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
	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
	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
	이 법과 그 조약에서 정하는 바
	에 따른다. 이 경우 조약에 이
	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
	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.